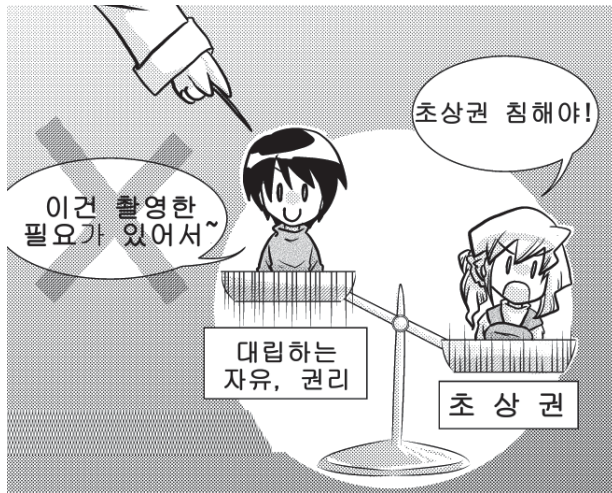


정보 윤리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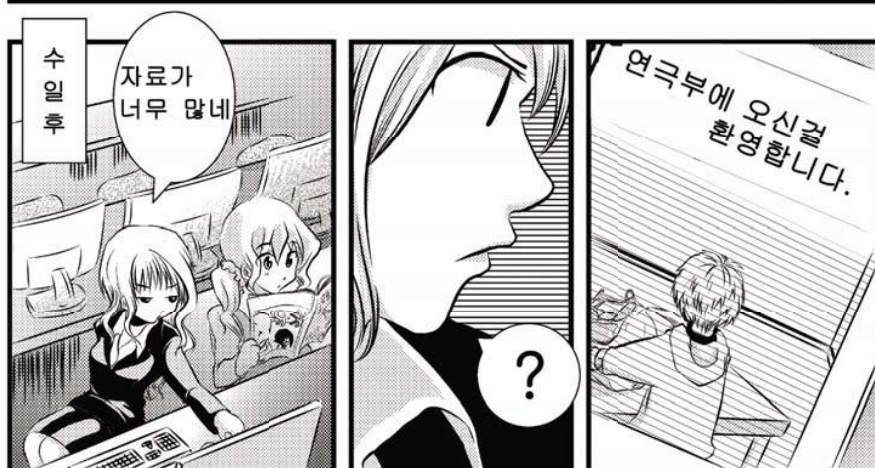
Copyright © 2012
Izumi FUSE and Shigeto OKABE
Research Division of Media Education,
Information Initiative Center,
Hokkaido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웹 카메라로 초상권을 침해?



【목표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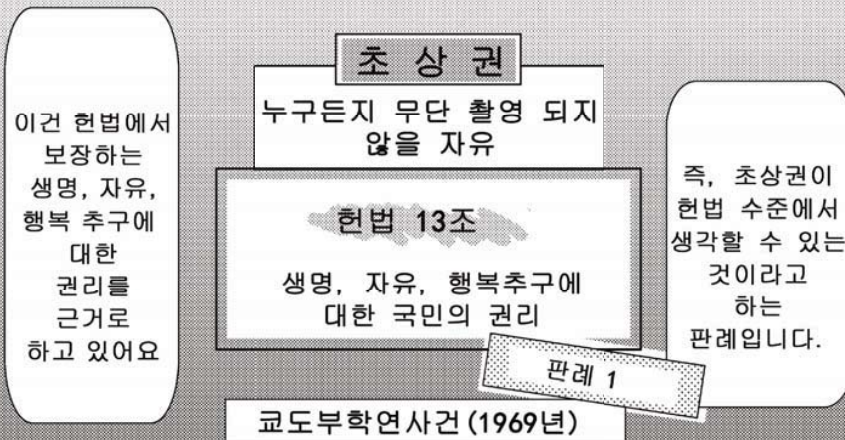
1. 초상권과 개인 정보에 대한 이해.
 - 법규에서 규정의 유무나 대표적인 판례를 이해한다.
 - 초상권 및 도촬 행위, 도난 방지 행위에 대해 생각한다.
 - 초상화 일러스트, 캐릭터의 초상권에 대해 조사한다.
2. 일반인의 초상권과 유명인의 초상권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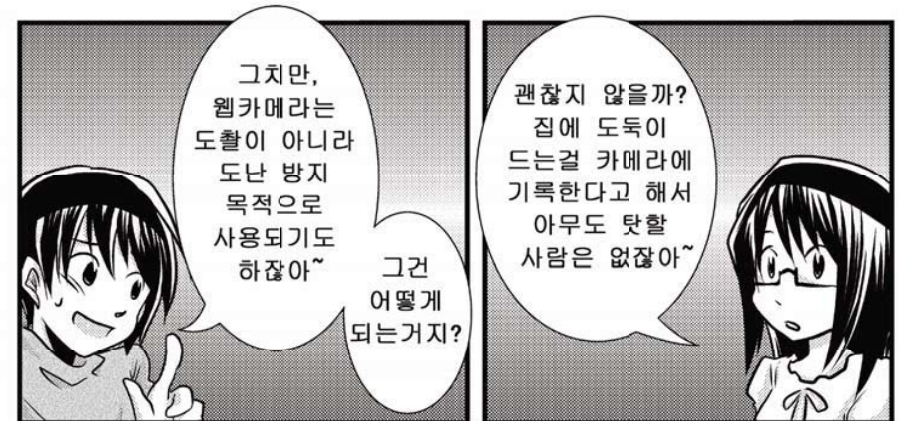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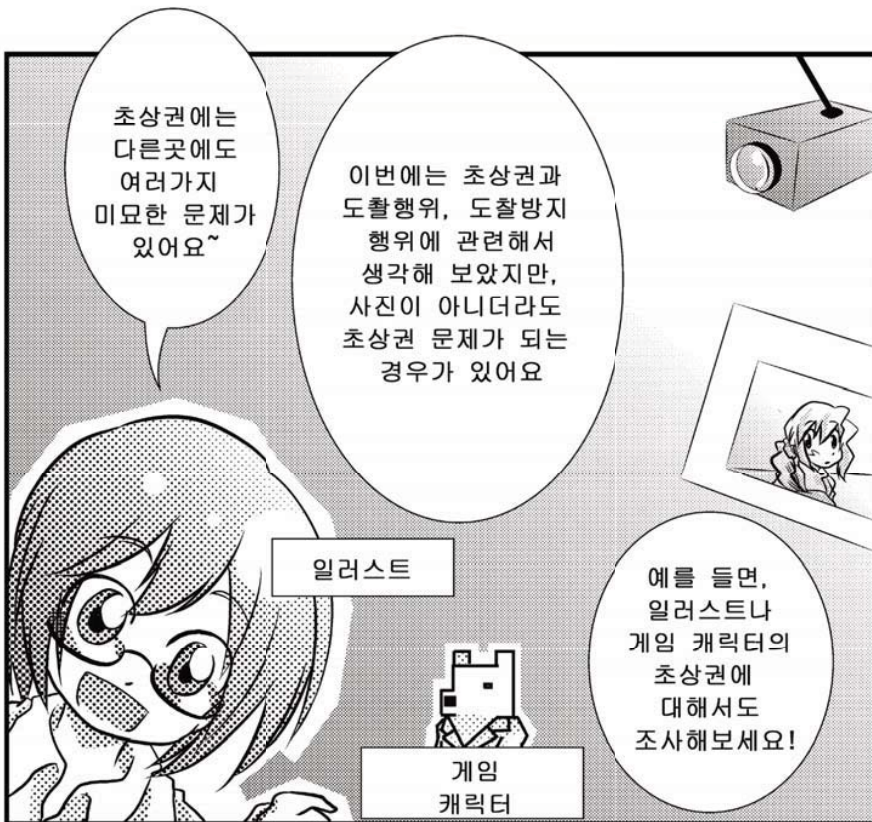


판례에 따라 권리가 확인되어 있다









용어

초상권

사람의 용모나 자태, 즉 초상에 대한 권리다. 무단으로 초상을 촬영되지 않는 인격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문상의 규정은 없고, 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인되어 온 권리다. 그 근거는 일본 국헌법 13조의 「개인의 존중, 행복추구권, 공공의 복지」로 여겨진다. 또, 배우 등의 초상은, 스스로 생취했던 명성 때문에, 대가를 얻으며 이용시킬 수 있는 이익을 소유하는 것이며, 인격적 이익과는 이질적인,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소유 한다고 여겨진다. 이 권리는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불린다. 2012년 2월 2일, 대법원 제1소법정에서는,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흡인력을 소유할 경우가 있어, 이러한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사법으로 처음으로 정의하고, 「①초상 등 그것 자체를 독립시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 ②상품 등의 차별화를 꾀할 목적에서 초상 등을 상품 등에 첨부, ③초상 등을 상품 등의 광고로서 사용 등」의 경우의 위법성에 언급했다.

프라이버시 (사생활침해)

일본에서는,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도, 초상권과 동일하게 법문상의 정의는 없고, 판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렌과 브랜드이스는, 사생활을, 1890년, 「the 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화가 나아가는 중에, 자기정보 컨트롤권 (자기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로서도 생각되어 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에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성명, 생년월일, 기타의 기술로 특정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일 주소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안되지만, 다른 정보와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된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일본국헌법 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로 되어, 보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과의 균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립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개의 판례(교토부(京都府)학연사건, 포커스의 법정 내 몰래 사진 사건)의 의도하는 것을 지금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

초상권에 관한 대법원판례 「포커스」의 법정내의 도촬 사건: 사건번호 헤이세이15(受) 281

사건명 (손해 배상) 재판일 2005년 11월10일
 법정명 대법원제1소법정 판례집 제59권 9호 2428페이지
 결과 기타 재판일 헤이세이14년11월21일
 원심재판소명:오사카(大阪) 고등법원

판시사항

1. 사람의 용모, 자태를 그 승낙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불법 행위의 여부
2. 사진주간지의 카메라맨이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피의자의 용모, 자태를 촬영한 행위가 불법 행위법상 위법으로 여겨진 사례
3. 사람의 용모, 자태를 묘사한 일러스트 그림을 공표하는 행위와 불법 행위의 여부
4.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용모, 자태를 그린 일러스트 그림을 사진주간지에 게재해서 공표한 행위가 불법 행위법상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례
5.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의 피고인의 용모, 자태를 그린 일러스트 그림을 사진주간지에 게재해서 공표한 행위가 불법 행위법상 위법으로 여겨진 사례

재판 요지

1.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자태를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인격적 이익을 소유하며, 어떤 사람의 용모, 자태를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 행위법상 위법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피 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촬영된 피 촬영자의 활동 내용, 촬영의 장소, 촬영의 목적, 촬영의 태도,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피 촬영자의 상기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 생활상 받아들여야 할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2. 사진주간지의 카메라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동정을 보도할 목적에서, 구류 이유공개 수속이 행해진 법정에서 용모, 자태를 그 승낙 없이 촬영한 행위는, 수갑을 하고, 노끈을 붙여진 상태의 용모, 자태를, 재판소의 허가 없이 몰래 찍은 것 등 판시의 사정 아래 불법 행위법상 위법이다.
3. 사람은 자기의 용모, 자태를 묘사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해서 함부로 공표되지 않는 인격적 이익을 소유하지만, 그 일러스트 그림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회 생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불법 행위법상 위법으로 평가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러스트 그림은 그 묘사에 작자의 주관이나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며, 공표되었을 경우도, 이것을 전제로 한 받아들여짐을 한 다는 특징이 참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서 자료를 보여져 있는 상태 및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의 용모, 자태를 그린 일러스트 그림을 사진주간지에 게재해서 공표한 행위는, 불법 행위법상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에서 수갑, 노끈에 의해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의 용모, 자태를 그린 일러스트 그림을 사진주간지에 게재해서 공표한 행위는, 불법 행위법상 위법이다.

참조법조

(1~5에 대해서) 민법 709조, 민법 710조, 헌법 13조 (2에 대해서) 형소송규칙 215조 이밖에, 아래에서 교토부(京都府)학연사건에 관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3월9일 열람).

사건번호 쇼와(昭和)40(あ) 1187

재판 연월일 쇼와(昭和)44년12월24일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사건)

법정명 대법원대법정재판

종별 판결

결과 기각

판례집 권·호·페이지 제23권 12호 1625페이지

원심재판소명:오사카(大阪) 고등법원

재판소판례검색 시스템

<http://www.courts.go.jp/search/jhsp0010?hanreiSrchKbn=01>

교토부(京都府)학 연사건의 판례

<http://www.courts.go.jp/search/jhsp0030?hanreiid=51765&hanreiKbn=02>